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017년 5월 18일 도시재생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
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